

《2024. 8월 1차》

# 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 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2024년 신년화두

수원을 새롭게  
시민을 빛나게

## 興事利民

홍사이민 | 새로운 도시로 도약, 시민의 복리 증진



###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



#### 관련 내용

##### ○ 개요

-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,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이득(부가서비스)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원칙


##### ○ 내용해설

- (공용물)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,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(예시 : 청사, 관사, 공용차량 등)
- (예산 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) 항공마일리지, 기관 법인카드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 등
- (사적인 용도의 사용·수익)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(재산)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

#### 위반 예시

-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
-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
-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
-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
-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 공무원의 개인 별장 신축 현장에 사용
- 공공기관 연구원이 공무여행으로 적립한 마일리지 일부를 배우자의 항공권 구매에 사적 사용

부조리  
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